

## 참 고 자 료

자료문의 / 자격징수실 ☎ 3270-9340, 9161 팀장 양인성 파트장 김덕호

### 건강보험료 6.5% 인상되었으나, 65세이상 노인등,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확대

○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이재용)은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험료 6.5%인상을 2007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.

- 올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주요 원인은 2005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에 따른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율 인하 등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및 의료 이용량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에 대비하여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·유지하기 위한 것이다.

※ 보험료율(액) 6.5% 인상

- 직장가입자 : 4.48%→4.77%(0.29%P↑)
- 지역가입자 : 소득, 재산등에 따른 평가점수당 131.4원→139.9원(8.5원↑)

○ 지역가입자는 연령, 자동차 연식에 따른 세액변경 등으로 추가 인상 또는 인하

-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세액변경,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6.5%외에 추가로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가 있으며, 이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.
-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보험료는 하한선이 인하여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, 직장보험료는 상한선은 높아져 고소득층은 부담이 증가된다.

- 지역가입자 하한선은 35점에서 20점으로 인하
- 직장가입자 상한선은 보수월액 5,080만원에서 6,579만원으로 상향조정

○ 또한,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, 등록 장애인, 모·부자세대, 조손가정, 소년소녀가장, 만성질환 세대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정관을 개정하였다.

- 작년까지는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1,139천세대에 대해 건보료를 10%~30% 경감하였으나

- 1월부터는 연소득 360만원 이하 이고 과표재산 1억 3천만원 이하인 취약계층 세대로 경감대상이 확대된다.

• 특히 경감대상 세대 중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는 소득창출 여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경감기준에 따라 현재 10%~30%를 경감 하던 것을 30%로 경감을 확대하였다.

- 이는 실질 소득의 증가없이 재산과표의 증가로 인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에서 제외되는 세대를 최소화하고 실질 소득이 낮은 비경제활동 계층에 대하여 경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인세대, 저소득 취약계층 등 지역가입자 총812만세대 중 243만세대(29.9%)가 각종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.

○ 이번 조치로 경감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은 보험료 6.5%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경감으로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줄어들었으며, 보험료 인상 등이 반영된 1월분 고지서는 24일부터 발송하였다고 밝혔다.

## <보험료 경감 사례>

### ○ 사례1

서울 영등포구에 배우자(75세)와 함께 거주하는 ㄴ씨(84세)는 작년 10월까지 65세이상 노인세대로 10% 경감 적용을 받아 64,220원을 납부하여 왔으나, 11월 재산과표가 증가되어 경감 적용을 받지 못하고 81,200원을 납부하였음. 2007.1월부터는 70세이상 노인세대에 해당되어 산정된 보험료 84,770원 중 30%인 25,430원이 경감되어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59,340원이 고지됨

### ○ 사례2

서울 양천구에 배우자(50세), 자녀2명(24, 17세)과 함께 거주하는 ㄷ씨(57세)는 작년 10월까지 장애인세대(3등급)로 20% 경감 적용을 받아 32,590원을 납부하여 왔으나, 11월에 연금소득(연275만원)발생으로 경감 적용을 받지 못하고 43,360원을 납부하였음. 2007.1월부터는 경감적용이 확대되어 산정된 보험료 45,180원 중 20%인 9,030원이 경감되어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36,150원이 고지됨

<참고자료>

# 2007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및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

□ 2007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: 6.5%

## 【지역가입자】

- 점수당 금액: 131.4원(부과표준소득 등급별 적용점수)→139.9원(보험료부과점수)
- 가입자 월보험료 산정방법 : 월 보험료 = 보험료부과점수 × 점수당 금액

보험료부과점수 범위	점수당 금액	월보험료 산정
20점 미만	139.9원	= 20점 × 139.9원
20점~11,000점	139.9원	= 실제 보험료부과점수 × 139.9원
11,000점 초과	139.9원	= 11,000점 × 139.9원

※ 법령이 개정되어 2007.1.1부로 종전 부과표준소득등급이 폐지되고 실제 부과요소별 점수에 의하여 보험료가 산정됨

## 【직장가입자】

- 보험료율 : 4.48% → 4.77%(사용자, 가입자 각각1/2씩 부담)

구분	계	가입자부담	사용자부담	국가부담
근로자	4.77(100)	2.385(50)	2.385(50)	
공무원	4.77(100)	2.385(50)		2.385(50)
사립학교교직원	4.77(100)	2.385(50)	1.431(30)	0.954(20)
군인	4.77(100)	2.385(50)		2.385(50)

- 가입자부담(50%) 보험료 산정방법 : 월 보험료 = 보수월액 × 보험료율

※ 보수월액(월평균보수) = 연간 총보수액 ÷ 근무월수

※ 1인 총 보험료(가입자부담 50% + 사용자부담 50%) = 가입자 부담보험료(10원미만 단수 버림) × 2

보수월액 범위	보험료율	월보험료 산정
28만원 미만	2.385%	= 28만원 × 2.385%
28만원이상~6,579만원	2.385%	= 실제 보수월액 × 2.385%
6,579만원 초과	2.385%	= 6,579만원 × 2.385%

※ 법령이 개정되어 2007.1.1부로 종전 표준보수월액 적용 부과등급이 폐지되고 실제 보수월액에 의하여 보험료가 산정됨

※ 2006.12월분까지의 보험료는 종전 표준보수월액에 의하여 산정 및 정산이 이루어짐

## ※ 부과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험료 증감 현황

(단위 : 천세대, %)

구분	가입자수 (세대수)	증가		감소		무변동	
		가입자수	비율	가입자수	비율	가입자수	비율
계	18,339	7,388	40.3	8,805	48.0	2,146	11.7
직장	10,224	3,609	35.3	4,850	47.4	1,765	17.3
지역	8,115	3,779	46.6	3,955	48.7	381	4.7

보험료경감 조건표(공단 정관 제57조제4항관련)

구 분	경감적용		적 용 요 건			구비서류
	등급	비율	소득금액	과표재산	장애등급	
제1호, 제3호, 제4호 해당세대 (65세이상 노인) (모자부자가정) (소년소녀가장)	1	30	360만원이하	5,500만원이하	-	재학증명서등
	2	20		8,500만원이하		
	3	10		13,000만원이하		
제2호 해당세대 (70세이상 노인)	-	30	360만원이하	13,000만원이하	-	호적등본 등
제5호 해당세대 (장애인· 국가유공자)	1	30	360만원이하	13,000만원이하	1-2등급	장애인수첩 상이증서등
	2	20			3-4등급 (상이지는3-5등급)	
	3	10			5-6등급 (상이지는6-7등급)	
제6호 "가"목, "나"목 해당세대 (화재·부도·경매)	-	20	제한없음	제한없음	-	화재사실확인원 부도증명원 경매통지서 등기부등본 등
제6호 "다"목 및 "라"목 해당세대 (장기수용만성질환)	1	30	360만원이하	5,500만원이하	-	재소확인서 등
	2	20		8,500만원이하		
	3	10		13,000만원이하		

주1) 소득금액은 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, 농업소득이며 종합 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

주2) 경감 적용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, 장애인은 장애등급 기준까지 충족되어야 함

주3) 동시에 2항목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률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.